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의안 번호	68
----------	----

제출년월일 : 1992년 4월 28일

발의자 : 배기한의원의외6인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인 영등포구청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들음으로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내 주민 의견수렴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함.

2. 주요골자

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대상

- (1) 부구청장
- (2) 보건소장
- (3) 총무국장
- (4) 재무국장
- (5) 시민국장
- (6) 도시정비국장
- (7) 건설국장

3.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37조

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규칙 제65조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 별첨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1. 목 적

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인 영등포구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92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들음으로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내 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

2. 관계공무원 출석일시

가. 일 시 : 92. 5. 8 14:00

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다. 출석 대상 공무원

- (1) 부구 청장
- (2) 보건 소장
- (3) 총무 국장
- (4) 재무 국장
- (5) 시민 국장
- (6) 도시정비국장
- (7) 건설 국장

3. 구정질문 범위

가. '92년도 구정업무 전반